

독일영화진흥원의 심사·지원제도

KO F I C

독일 영화진흥원(Filmförderungsanstalt)의 심사·지원 제도

영화진흥위원회 독일 통신원 이원호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년 12월 06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14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일반적 심사 기준 / 1

03

심사 위원회 / 2

04

영화 제작 지원 사업 / 3

05

시나리오 지원 사업 / 6

06

영화 배급·판매·대여 지원 사업 / 7

07

그 외 지원사업 / 7

08

나오는 말 / 9

1. 들어가는 글

독일 영화진흥원(Filmförderungsanstalt)은 극장, 비디오, 텔레비전 방송사의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만들어지는 영화진흥기금을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Filmförderungsgesetz)에 의거하여 여러 지원 사업에 집행한다. 지원 사업은 시나리오 작업, 영화 제작, 영화 배급·판매·대여 등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극장 지원 사업, 독일 영화유산 디지털화 산업 등의 지원 사업이 있다. 한 편 유럽 내 여러 국가 및 지역과의 영화합작 사업을 후원함으로써 유럽내 영화계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는데에도 기여하려 한다.

지원금의 형태는 크게 대부금의 경우와 상환의 의무가 없는 단순 지원금의 경우로 나뉜다. 대부금 지원의 경우에는 조건부 상환의 대부금과 무이자 상환 대부금이 있다.

독일진흥원의 지원사업의 전반을 검토할 때 눈에 띄는 점은 상업적, 혹은 각종 영화제 입상 경력 등에서 성공을 거둔 제작사 및 사업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이후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용이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하게 될 성공점수제 구조(Referenzpunkte System)에서 뚜렷이 나타나고,¹ 또 그 이외 사업에서도 대부금 상환의 실적에 따라 일방 지원금의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이하에서는 지원 사업의 전반을 관통하는 영화진흥원의 일반적 지원 사업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서술한 후, 그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크게 영화 제작 사업, 시나리오 사업, 영화 배급·판매·대여 사업, 이 외 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일반적 심사 기준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Filmförderungsgesetz)에 의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독일 영화 시장 구조의 안정화와 독일 영화의 창조적·예술적 질을 높임으로써 독일 영화의 국내외적 성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³ 따라서 이하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원활동에 있어 기준은

영화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화의 재정적 지원

독창성, 작품성 높은 영화 제작의 후원

에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적용되지 않고, 모든 지원분야에 있어 함께 적용된다. 특히, 각종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 배급·판매·대여 사업자, 극장운영자 등은 지원 받을 프로그램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항상 사업의 수익가능성을 설득력 있고 상세하게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¹ 이하 4. 2)와 3) 참조

² 이하 6의 1)과 2) 참조

³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1.
(<http://www.ffa.de/ffg.html>)

3. 심사 위원회

각종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검토, 심사하고 결정하는 심사위원회(Vergabekommission)는 다음의 13개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임기를 마친 후 1회 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 전의 위원활동이 5년 이상 지난 이후에는 위원으로 다시 재위촉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장은 영화진흥원의 원장이되며, 13인의 위원 중 7인 이상이 참석할 시 심사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가진다.⁴

13인의 위원들 중 적어도 1인은 구체적인 영화제작과정과 비용에 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표 1] 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13개 단체

1. 독일 국회	Deutscher Bundestag
2. 정부 산하 문화 미디어 국	Zuständige oberste Bundesbehörde für Kultur und Medien (BKM)
3. 극장 협회	HDF Kino e.V.
4. 극장 주식회사-독일 영화예술연극협회와 지역영화활동 협회	AG Kino – Gilde Deutscher Filmkunsttheater e.V. und Bundesverband kommunale Filmarbeit e.V.
5. 독일제작자 연합-영화&텔레비전 협회	Allianz Deutscher Produzenten – Film & Fernsehen e.V.
6. 독일 영화 제작자 협회와 다큐영화 노동협업회	Verband Deutscher Filmproduzenten e.V. und Arbeitsgemeinschaft Dokumentarfilm e.V.
7.8. 영화와 텔레비전 감독 협회, 1인은 단편영화주식회사와의 협의 하에 함께 선정	Bundesverband der Film- und Fernsehregisseure e.V. (BVR), 1 Mitglied im Einvernehmen mit der AG Kurzfilm e.V.
9. 독일 시나리오 작가 협회	Verband Deutscher Drehbuchautoren e.V.
10. 영화배급협회와 영화배급사 협업체	Verband der Filmverleiher e.V. und Arbeitsgemeinschaft Verleih e.V.
11. 시청각 미디어 협회와 비디오와 미디어상업 이익협회	Bundesverband Audiovisuelle Medien e.V. und Interessenverband des Video- und Medienfachhandels in Deutschland e.V.
12. 공공방송사 ARD와 ZDF	Ö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en, ARD und ZDF
13. 민영 방송사와 텔레미디어 협회	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medien e.V.

참조: <http://www.ffa.de/vergabekommission.html>

⁴ Filmförderungsgesetz §7 참조. (<http://www.ffa.de/ffg.html>)

4. 영화제작 지원 사업

1) 프로젝트영화지원

영화 제작사가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의 시나리오와 제작방식 및 영화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컨셉을 제시하여 심사위원회에 의해 발탁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으로 조건부로 상환하는 대부금이다.

영화는 성인 영화의 경우 최소 79분, 어린이 영화의 경우 최소 59분의 길이가 되어야 한다. 영화 제작자는 신청시 독일어 시나리오, 배우 캐스팅, 스태프 리스트, 촬영 계획, 독일 법률에 정한 각종 제작시 근무 여건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정 계획, 예상비용견적, 영화배급사의 배급승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영화 제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지와 그 영화적 가치가 폭넓게 서술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영화 제작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지원금액을 1백만 유로로 법률에 정하고 있고, 영화 제작 비용에 따른 최소 지원 금액의 목록을 정해 두고 있다. (목록의 일부: 표 2 참조) 이하의 [표 2]을 보면 영화 제작전체비용이 적을수록 최소 지원 금액이 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영화 제작 비용 대비 최소 지원액 비율

영화 제작 비용	최소 지원 금액	영화 제작 비용 대비 지원금 비율
200.000 €	40.000 €	20,0%
400.000 €	80.000 €	20,0%
600.000 €	120.000 €	20,0%
700.000 €	140.000 €	20,0%
800.000 €	160.000 €	20,0%
1.000.000 €	200.000 €	20,0%
1.333.334 €	200.000 €	15,0%
1.400.000 €	210.000 €	15,0%
1.500.000 €	225.000 €	15,0%
2.000.000 €	300.000 €	15,0%
3.000.000 €	300.000 €	10,0%
3.500.000 €	350.000 €	10,0%
4.000.000 €	400.000 €	10,0%

참조: Filmförderungsgesetz: §§32-39

(<http://www.ffa.de/foerderbereiche-produktion-3.html>)

영화 지원신청은 시나리오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화컨셉의 독창성에 주요 심사 기준을 둔다.

결정된 지원 금액은 영화 제작 시작 전에 지원금의 25%, 제작 중 50%, 첫 편집본의 검토 후 15%, 최종비용검토 후 나머지 10%가 송금된다.

지원금은 영화 개봉 이후 수입액이 전체 제작 비용의 5%를 넘어가는 시점으로부터 상환될 의무가 부여된다. 수입액의 계산과 상환은 영화 개봉 첫 3개월 이후, 그 이후 2년간은 매 6개월 간, 2년 이후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최장 10년 동안 상환될 수 있다.

2) 성공작 지원

이 지원 제도는 성공한 독일 영화의 제작자에 추후적으로 일방 수여되는 지원금으로 지원금은 이후 새로운 영화 제작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지원제도는 성공점수제(Referenzpunkte System)로 운영되는데 성공점수제란 다음과 같다: 한 영화의 제작 비용이 8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 성공한 독일 영화로 인정되어 이 지원제에 지원신청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150.000 성공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는 15만 관객을 동원해서 얻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각종 국내외 영화제에서 입상하여 100,000 점을 얻고, 더불어 50,000관객을 동원하여 얻을 수도 있다. 영화제작비용이 높아질수록 얻어야 하는 성공점수도 높아지는데, 제작 비용이 8백만 유로 이상 2천만 유로 이하의 비용을 들인 영화의 경우, 300.000점수를, 2천만 유로 이상의 비용을 들인 영화의 경우 500.000점을 얻어야 한다. 이 지원금은 각 해에 지원하는 신청자수와 각 해 영화진흥원의 진흥기금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수여된다.

Sebastian Schipper 감독의 2015년 작 Victoria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2015년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으로 100.000점, 독일 영화제(Deutscher Filmpreis)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100.000점, 유럽 영화제(Europäische Filmpreis) 출품작이 된 것으로 50.000점을 얻고⁵ 영화 개봉 후 독일 내에서의 1년 동안의 관객 수로 388.952점을 얻어 총 738,952점을 얻었다. 이로써 2천만 유로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선점해야 하는 500.000점을 넘도록 점수를 얻어 이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을 얻어 355.658유로의 지원금을 획득했다.⁶

지원금을 수상한 제작사는 지원금 수상 이후 2년 이내에 새로운 영화제작에 지원금을 투자해야 한다. 지원금을 수상한 제작사는 지원금 사용 신청을 새 영화 촬영 시작 3주전에 제작 비용 계산서, 제작비용조달계획서, 현실적인 영화제작 계획서를 동봉하여 해야 한다.

⁵ 영화진흥에 관한 법률 §22에 어떤 국제 영화제의 입상 및 경쟁 부문 초청이 얼마의 점수를 얻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 및 칸느, 베를린,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서의 수상의 경우 200.000점을 얻고, 유럽영화제에서의 수상, 그 이외 국제영화제에서의 경쟁부문수상, 독일 영화제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후보작으로 선정, 칸느, 베를린,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후보로 선정되었을 시 100.000점을 얻고, 그 외 국제 영화제 중심 경쟁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되거나 유럽영화제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을 시 50.000점을 얻는다.

⁶ 참조: <http://www.ffa.de/foerderentscheidungen.html> 에서 Referenzfilmförderung 2016

지원금은 제작사의 지원 신청의 기준이 된 성공작과 지원금이 투자될 새 영화가 해외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거나 해외로 매매될 시 수익금의 1.5%, 최대 50.000유로를 독일 영화경제조직(Die zentrale Dienstleistungsorganisation der deutschen Filmwirtschaft)에 낸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3) 단편영화 지원

이 또한 성공점수제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금이다.

1분에서 15분 사이 길이의 단편 영화나 58분까지 길이의 어린이 영화가 지원대상이 된다. 각종 영화제나 단편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15 분에서 45 분 사이 길이의 영화전문대학에서의 제작 영화 혹은 신인 영화도 지원된다.

4) 독일-프랑스 간 합작 제작 지원

프랑스의 제작 파트너와 합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작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영화진흥원이 프랑스의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CNC)와 함께 독일-프랑스 영화 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자는 이후 조건부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영화 제작 비용의 20%까지, 그리고 최대 300.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시 독어본 시나리오, 경제처에서의 증명서, 영화배급사로부터 배급의 관심을 표명한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독일-프랑스 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년 중 세 번의 지원 작품 선정 위원회 모임이 개최된다.

이 외 지원 요건은 위의 프로젝트 영화 지원 조건과 같다.

5) 독일 이탈리아 간 합작영화 발전 기금 사업

독일 이탈리아 간 합작 영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독일의 영화진흥원과 이탈리아의 문화관광부가 함께 조성하는 한 해 기준 100.000유로의 기금이 다양한 합작영화에 지원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및 여타 다른 국가 영화 관객들을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 제작사의 합작 사업으로 계획되는 영화에 대해 최대 30.000유로까지 지원되는 상환 의무 없는 단순 지원금이다. 영화는 작품성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및 다른 유럽 국가의 관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신청하는 영화는 독일과 이탈리아 각개 국가에 적어도 한 제작자 씩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한 개 제작자의 참여도가 최대 80%를 넘지 않고, 또 최소 2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제작자는 상세하고 풍부한 영화 제작 및 후반작업까지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작비용을 대는 파트너, 배급사 혹은 배급에 도움을 주는 방송사를 제시하여야 하고, 영화초기대

본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먼저 지원이 확정된 이후 지원금의 60%가 한 제작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40%의 지원금은 모든 제시한 계획이 실행되었음을 알리는 보고서, 최종 시나리오, 프로젝트 개발비용 검토서, 제작 비용보고서, 최종 제작비용조달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송금된다. 이 모든 서류들은 적어도 첫 지원금 송금 후 2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⁷

6) 범지역 합작 협정(Co-Development Abkommen Großregion)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화 프로젝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범 지역 프로젝트. 독일의 영화진흥원, 프랑스의 CNC, 룩셈부르트 영화 기금, 독일 Saarland주의 미디어 회사, 독어권 벨기에의 정부부처, 프랑스 Grand East지역 정부부처가 합작하여 한해 55.000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영화 제작 프로젝트 지원. 독어, 프랑스어 혹은 룩셈부르크어로 제작되는 영화이어야 한다. 영화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파트너 제작자의 참여도가 적어도 10%가 되어야 한다.

5. 시나리오 지원 사업

이미 두 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제작한 경력이 있는 시나리오 작가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인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한 제작자와 공동으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순 지원금으로 시나리오 현실화를 위해 최대 30.000유로, 예외적인 경우 50.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시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Treatment), 한 장 분량의 내용 설명, 상세히 서술된 한 장면의 대화분량을 제출한다.

지원금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 작가는 Treatment가 지원신청 당시의 컨셉에 맞게 발전되었는지를 영화진흥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2년 후에는 완성대본, 혹은 대본 1차본이 검토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1년 간 4차례 수상이 결정되는데, 결정 권한은 4인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지원 선정위원회이다. 4인의 위원은 위 심사위원회 중 4, 5, 7, 9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 3. 심사위원회 중 위원구성 표 참조)

⁷ 참조: Deutsch-Italinischer Co-Production Development Fonds, Richtlinie (<http://www.ffa.de/foerderbereiche-deutsch-italienischer-co-production-development-fonds.html>)

6. 영화 배급·판매·대여 지원 사업

1) 영화 대여 및 마케팅 지원

영화 배급 및 대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영화 배급 및 대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 영화 배급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조건부 상환조건으로 600.000유로까지 지원받는다. 이에는 영화 복사본 제작,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이 포함된다. 이 신청은 영화의 배급과 광고 활동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트레일러, 포스터 제작 등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상환된 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일방 지원금으로 재지원될 수 있다. 이는 배급사의 새 필름 배급활동이나 영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영화의 배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외 여러 미디어에서의 광고를 지원하는 미디어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특히 독일 전역에서 적어도 25개 극장에서 개봉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화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공 방송사와 민영 방송사와의 협의 하에서 수상이 결정된다.

비디오 및 VOD 사업의 광고 지원 신청은 극장 개봉에서의 미디어 광고 활동 지원으로 200.000지원금을 이미 받았고, 또 일정한 관객수를 동원한 영화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위원회 위원 중 4, 5, 6, 10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 3. 심사 위원회 중 위원구성 표 참조)

2) 비디오 지원

- 독일 극장 상영 영화를 DVD 나 블루레이, VOD 로 제작하려는 미디어 제작사에 수여되는 지원금. 무이자로 상환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600.000 유로까지 지원된다.
- 미디어 광고 사업,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여 사업에 있어서 초래되는 고비용, 혹은 외국어 자막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최대 150.000 유로까지 지원되는 사업.
- 지원금 상환의 결과가 좋은 미디어 제작사의 경우 신청에 따라 상환한 지원금을 새 영화의 저작권을 구매하는 사업의 일방지원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7. 그 외 지원 사업

1) 극장 지원

- 극장시설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 최대 200.000유로, 예외적인 경우 350.000유로까지 지원된다. 극장의 전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그 중 30%는 상환의무가 없는 일방 지원금, 70%는 이자 없이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될 수 있는 대여금이 다.

- 장애인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신청에 상환 의무 없는 일반 지원금이 수여된다. (예를 들어 시청각보조 장치 설치 등) 전체 투자금의 50%를 수여한다.
- 다양한 디지털화 작업에 관한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극장 상연관 에어컨 설치 작업, 스크린 은화 작업, 여러 케이블 작업 등.
- 특수한 광고 작업의 효율을 도모하거나 극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극장정책의 실현화를 돕는 일반 지원금 최대 200.000유로.
- 극장의 영화 추천 활동에 대해 5.000유로의 단순 지원금.
- 본 영화 시작 전 단편 영화 상영에 관한 단순 지원금 2.000유로.
- 극장 시설 개선과 현대화에 기여하는 극장정책을 위한 지원 신청에 대해 이전 영화진흥원에서 대출받은 지원금의 50%까지 상환의무를 해제해주는 지원금.

2) 영화복사본 보충 지원

20.000이하의 거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흥행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영화의 상영을 후원하기 위해 아날로그나 디지털 영화 복사본 제작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로써 극장주나 영화배급사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영화가 이미 400개의 극장에서 상영이 시작되었고, 적어도 1200만 관객 동원이 예상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 영화의 경우 요건조항은 일정 약화된다.

3) 독일 영화유산의 디지털화작업 지원

국가 영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독일 영화의 디지털화 작업을 후원함으로써 이 영화들이 계속적이고 대중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신청자는 신청 대상 영화의 전체, 혹은 부분 저작권자이다. 신청자는 디지털화한 수익사업 계획을 상세하고 설득력있게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 영화의 디지털화 사업에 최대 15.000유로가 지원되며, 전체 디지털화 비용의 20%에 이르는 신청자의 선투자금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영화는 각종 영화제 수상작, 혹은 경쟁 부문 후보작이거나 독일연방자료원/ 영화 자료원 (Bundesarchiv/Filmarchiv), 독일영화연구소(Deutsches Filminstitut), 독일 키네마테크 기금(Stiftung Deutsche Kinemathek)에서 작성하는 영화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일영화 리트스⁸에 올라간 영화이거나, 영화사적 그리고 예술사적 독창성이 인정되는 작품에 한한다.

⁸ 리트스에는 1895년 Max Skladanowsky 감독작 Windergartenprogramm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작으로는 2008년 Werner Schroeter감독의 Diese Nacht에 이르기까지의 영화가 망라되어 있다.

참조: Liste der filmhistorisch wertvollen und förderungswürdigen Filme des Deutschen Kinematheksverbund

(<http://www.ffa.de/digitalisierung-von-content-52.html>)

신청자는 한 해 최대 10개 작품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8. 나오는 말

지난 달 11월 10일 문화부장관 Monika Grütter이 2017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집행에 들어가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여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개정된 법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Grütter장관 자신이 강조하듯이 영화진흥원의 기금을 성공가능성이 높은 영화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다는 점이었다.⁹ 이렇게 개정안의 기초를 발표하면서 Grütter 장관은 독일 영화 시장이 최근 보여준 가능성이 이러한 기금의 운영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15년 독일 영화 관객 점유율이 27.5%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과 올해 Maren Ade감독의 영화 Toni Erdmann이 칸느 영화제에 출품되어 큰 주목을 받고 아카데미 시상식의 외국영화부문에서도 후보에 오르는 등 독일 영화의 작품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독일 국회 내 야당을 비롯한 여러 영화계 인사들은 개정안이 영화계의 다양성과 작품성보다는 오락성과 상업성을 전면에 표방한다며 비판하였다.¹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특히, 2015년 독일영화 관객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영화가 오락성에 기대어 청소년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영화 *Fack ju Göhte* 였던 점을 볼 때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화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항상 영화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음을 볼 때 개정안 그 근본 기초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이러한 개정안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는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⁹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의 Pressemitteilung 403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Pressemitteilungen/BPA/2016/11/2016-11-10-bkm-filmfoerderungsgesetz.html>)

¹⁰ 영화 진흥법 개정에 관한 중결 협의에서 녹색당의 매체, 창조 경제 및 디지털 인프라 구조 부문에 관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 Tabea Rößner이 한 국회연설문 참조. (<http://tabea-roessner.de/2016/11/10/rede-zur-abschliessenden-beratung-zum-filmfoerderungsgesetz-am-10-11-16/>)